

第十三回 國會臨時會議速記錄 第二號 國會事務處

禮紀四二八五年七月四日(金) 上午十時

議事日程(第二次會議)

- 一 第一次會議錄通過
- 二 報告事項
- 三 憲法改正案

討論附案件

- 一 憲法改正案에 關한 全院委員長의 報告
- 二 憲法改正案

(下午七時五十八分開議)

○臨時議長(申翼熙) 座席移頓해 주십시오 이고
부디 第十三回 國會의 第二次會議을 始作합니다
第一次會議錄을 朗讀해 주십시오

(議事課長 第一次會議錄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틀린 것이나 或 빠진 것이 없
으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
項입니다 議事局의 報告에 依하면 報告事項이 없
다고 그렇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依해서 憲法
改正이 上程이 되는 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
찬가지로 第十二回國會에서 質疑應答이 아마政
府案이나 國會案에 있어서 行해진 줄로 압니다 마
는 會期가 파우어서 進行되는 나만큼 아마 여
기에 對한 여러분의 意見을 陳述하시야 될 것입
니다 前次會議에서 行해진 質疑應答을 그대로
繼續해서 알는지 또는 처음부터 다시 알는지 意
見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容恕하십시오
시방 憲法改正案을 上程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司會의 錯誤입니다 全院委員會의 報告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방은 全院委員會의 報告를 紹介합니다
一 (憲法改正案에 關한 全院委員長의 報告)

○全院委員長(池青天) 全院委員會의 報告를
하겠습니다 全院委員會는 七月三日·四日 兩日間을
眞摯한 討論을 한 결과 左와 如히 決定하였읍니다

- 一 新議會에서 立案한 兩改憲案이 綜合拔萃案을 中心
으로 討論할 것
- 二 同案中 「上院」 「下院」을 「參議員」 「民議院」
으로 改稱하고 附則第三項을 上院은 本法施行後 遞滯
없이 構成하여야 한다를 刪除할 것
- 三 國會議員提出改憲案中 七十條二項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
般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者의 行爲에 關
하여는 個別責任을 진다를 現行憲法 七十條第三項으
로 挿入할 것
- 四 大統領을 國會에서 選舉하는 問題는 不問에 勿
論
- 五 拔萃案 第七十條二項 中國會를 民議院으로 字句整
理한다

○臨時議長(申翼熙) 시방의 全院委員長의 報
告는 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報告
의 處理만 다른지 이案을 어떻게 取扱할 것
을 여러분이 意見을 이야기 하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本會議의
憲法改正案이라고 하면 草案에 關한 것입니다 그
러나 全院委員長의 報告에 依해서 이 것이 4個의

案으로 提出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만 全院委員長
의 報告에 그치지 않고 이案을 主張하고 있어 研究
하고 또 說明할 부분이 이것을 提出하는 形式
으로 于先 說明이 必要하지 않음과 關係가 됩니다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柳 鴻議員 말씀하세요

○柳 鴻議員 簡單히 이야기하겠습니다 說明前
에 全院委員會委員長이 報告한 대로 그것은 本
會議에서 반기로 動議합니다 議事進行이니까
動議할까요? 意見만 말씀해 주십시오

(議長) 하는이 있음)

朴定根議員 말씀해 주십시오
○朴定根議員 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했읍니다 마
議案이 議案이니만치 또는 이 憲法改正案을 따
고 우리의 大韓民國의 三千萬이 움직이는 것은
勿論 全世界가 注視하고 있는 問題를 여러분의
愛國的熱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밤에 우리의 禁
國滿한 結果는 어떻게 되었는지 매우 기쁨을 禁
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의 歷史에 남기지
않는 이 會議의 記錄이니만큼 나는 全院委員長
께서 報告하신 報告를 들었을 때에 遺憾千萬의
을지다 지금까지 各派交涉團體에서 數三日을
두고 熱誠을 다해가지고 국민 또는 오늘날까
지 各議員이 眞摯한 態度로서 우리가 여기서 三
三日을 두고 밤을 세우기만 해서 討論한 그 結果의
報告를 勿論 時間이 없어서 그와같이 차질을
모알기는 압니다 마는 다른 議案과 달리 이 國
家의 大憲法을 改正하는 議事를 이렇게 輕忽하

한 것을 보면 國會議員의 責任을 輕視하는 形
式으로 於先 說明이 必要하지 않음과 關係가 됩니다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柳 鴻議員 말씀하세요

거 臨하실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서 지금 議長께서 充分히 發言하신바와 마찬
 가지로 國會에 提出해가지고 이미 三十日以上
 公告해가지고 三千萬 國民에게 알린 予備의
 憲法改正案이 나와있음니다마는 그것을 第一次
 會議에 上程해가지고 여기에서 討論을하기爲
 해서 本會議을하고 全院委員會를 設いた것이
 아님니다 그러면 全院委員長은 이 予備의 憲
 法案을 討論한結果 문을 綜合해서 審査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그事實 그다음에 政府가 提出한
 原案가운데에 몇條몇條에對한것은 우리가 可決
 해가지고하고 몇條몇條에對한것은 우리가 此際에
 削除해가지고했다는... 우리가 過去 憲法을 改訂
 해 上程한바마는 먼저 予備 上程된 前例
 문보시고 過去에는 우리의 前例를 憲法全文에
 對해서 그대로 可나 否나하는것을 우리가 決
 定해왔지만 이번에는 여자가지도 研究한結果
 에 이 政府案에對해서도 우리가 逐條해가지고
 可한 部分이 있었고 우리가 削除할 部分이
 있음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三千萬國民에對해서
 우리가 討論한 內容을 우리가 明白히 보여줄
 意味가 있는것이요 다음에 國會議員이 提出한
 條文가운데에 우리가 可한 條文이 있고 否라
 고해가지고 이것을 採擇하자는 條文이 있으니
 가 이것을 우리가 綜合해서 먼저 政府가 提
 出한 條文가운데에 이 條文 이條文을 우리가
 全院委員會에서 可하기로했고 이條文이條文은
 削除하기로했다는 事實 다음에 國會議員이 提
 出한 이 條文 이條文 削除하기로했다는 事實
 二다음에 우리가 字句修正 이것도 나중에 法

律上으로 世上學者가 거기에對한 相當한 批判
 을할것이라고 보고있음니다 제어로 立法院인
 大韓民國國會가 그야말로 法的見地에서 予
 備의 條項을 採擇할것이에요 그 條文에 對
 해서 우리는 그것을 字句修正하라고 했음니다
 마는 그것이 適當한지 안한지는 모르겠음니다
 마는 거기에 對한 討論을 할것은 하지않습
 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條文을 가지고서 우리
 가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字句修正으로써 이
 前例 對해서든 이와같이 했다는 經緯의 事實
 을 先부 明白히報告를 해주자는것이 至當하다
 고 봅니다 그러서 지금 우리가 要請하시고
 그것을 討論해서 서로 協同하고 얘기하다가
 온다할기때문에 그러한 時間的 餘裕가 없다고
 하는것은 確定하고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五
 분이요 十分이요 또는 二十分이요 休息을 그
 때로 해가지고서라도 지금 全院委員長께서
 專門委員會로 가서 相應해가지고 여기에 對한
 正式報告를 해가지고 그러가지고 우리에게 報
 告를 해주시고 報告해주신 그 報告에 따라서
 먼저 會議에서 七分間을 했음니다마는 大
 體討論은 여기에 가지고 있음니다 그러다 지
 금 우리가 그동안에 議政壇上에서 大體討論을
 안했음지라도 充分히 討論을 한 점이 있으니
 大體討論은 略하고 全院委員會의 報告에 可하
 다면 可하다든지 그러한 程度로 하는것이 當
 然하다고 봅니다 彼此의 여러분의 그 程度는
 心境 또한 疲困한것도 잘 알기는 안나다마는
 國家의 大典인憲法인만큼 우리가 政令 時間이

구어時間 간다고 하더라도 밤을 새서라도 우
 리는 여기에 對해서 具備한것은 具備해가지고
 넘쳐있어야 되는것이 우리의 國會의 取할 態
 度가 아닌가 생각해서 或은 제가 이러한 態
 度를 하지않는지라도 賢明하신여러분은 잘 아
 시겠지마는 性質이 急하신지 너무나 疲困하
 는지 모르지마는 隨會를 省略하고 그때로
 通過해가지고 하시니 아무리 疲困하시더라도 全
 院委員會의 報告를 그대도 하는것은 義務가아
 니니 十分이요 適當한 時間 休息을 하드라
 는 專門委員會로 하여금 專門委員會의 條文은
 提出해서 우리가 採擇하는順序를 밝는것이 至
 當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와같은 意見을 말
 습니다

○臨時議長(申眞履) 또 意見 있으면 말씀해
 요

池青天議員 말씀하요
 ○全院委員長(池青天) 이제 期暇해서 報告한
 全院委員長의 報告를 接受與否를 이本會議에서
 決定해서야 할것입니다 順序가...二 다음에는
 金素烟議員께서 이 拔萃한 案에 對해서 說明
 이 제실할 합니다 다만 그 먼저 이 報告를
 接受與否를 決定해주시기를 望하고 또한 金
 素烟議員의 說明이 있을것을 望합니다

○臨時議長(申眞履) 그러면 注意해주시요 이
 本會議에 報告하는것은 院議로 決定한性質이
 外에는 報告하는것으로 할이 안됩니다 아까
 朴定根議員의 報告와 마찬가지로 이 全院委員
 會의 報告 이것이 省略된다는것보다도 이 拔
 萃案 이것이 極히 重要할수있어 國家의 大法

인 改憲案이니만큼 憲事錄이나 記錄에 明白히 남지야 勿 處地이니만큼 萬一 金宗順議員의 準備한 說明과 및 內容이 있거든하면 이때에 說明해주시면 좋겠어요

金宗順議員 說明해오

○金宗順議員 全議員委員長報告를 補充해서다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이의 說明과 나누어 드린 兩改憲案 拔萃綜合案이라는 그 內容은 實히 詳을 압니다 여기서 政府提出改憲案과 國會의 提出改憲案 두가지 중에서 採擇한 條文名과 條條 條條 이것만을 說明드리면 全部가 다 記錄에 넘겨서 이것이 이며 提案전반을 全部 이것 이 이 拔萃案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까 그러한意味에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政府提出改憲案中 原文 第三十一條 二項으로 「國會는 民議院과 參議院으로서 構成한다」는 것을 採擇합니다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三十二條 是 二項으로 採擇합니다 또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三十三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三十五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三十六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三十七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三十八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三十九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四十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四十五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四十六條의 二項으로 이것은 全 期說明드려야 되겠습니다 「第四十六條 大統 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 其他 法律이 定하는 公務員의 그 職務履行에 關하여 本法 또는 法律에 違背한 때에는 國 會는 彈劾의 訴追를 決議할 수 있다」 「國會의 彈劾訴追는 民議院議員 五十人以上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決議는 兩院合會에서 各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의 出席과 出席議 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第四 十七條 이것은 現行憲法입니다 第二項 政府提出 改憲案中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五人과 參議員五人이 審判官이 되 但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 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 그리고 政府提出改憲 案中 第四十九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五十三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五十四條 政府提出改憲案中 第六十九條 條文은 國會提出改憲案과 有어있 기때문에 第六十九條를 朗讀드리겠습니다 政 府提出改憲案 第六十九條 第一項 「國務總理는 大統領이任命하고 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民 議院議員總選舉後 新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國 務總理任命에 對한承認을 다시 얻어야 한다」 國會提 出改憲案 第六十九條中에서 「國務總理가 副位된 때에는 十日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 다」 國會提出改憲案中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 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國會提出改憲案中 「國 務委員總數는 八人以上十五人以內로 한다」 現行憲法 中 「軍人은 現行을 免한後가 아니면 國務總理는 國 務委員에 任命될 수 없다」 이것은 政府提出改憲案과 國會提出改憲案과 合해서 第六十九條로 決定된 條입니다 다음으로 國會提出改憲案中 第七十 條 이것은 現行憲法 第七十條의 第三項으로 新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內容은 「國務總理과 國 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에 屬하는 一般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자의 行爲 에 關하여는 個別的責任을 지는다」 이것을 新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國會提出改憲案 第七十條의 二項으로 이것은 朗讀드리면 必要가 있기때문에 說明드리고 있습니다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 決議를 하였을 때 十日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なければ...」 이것과 對한 前條하고 「民議院에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하였거나 國會議員總選舉後 最初에 國會開會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한 때에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이條에 있어서는 아 報告한 것과 같이 國會라고 하는 것은 國會提出 改憲案에서 單院制에 이르기까지 下院은 民議 院으로 해서 字句整理로 民議院으로 한 것입니다 國會提出改憲案中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決議 는 그 發議로부터 二十四時間以上이 經過된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國會提出改憲 案中 民議院은 國務院의 組織完了 또는 總選舉後의 信 任決議로부터 一年以內에 是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할 수 없다 但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贊成에 依한國務院 不信任決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음條項에 國會提 出改憲案中에서 「總辭職한 國務院은 新國務院의 組織 이完了될 때까지 그 職務를 行한다」를 新設합니다 다음 國會提出改憲案中 第七十三條는 採擇하는 예 二部分은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이여야 하며 國務 總理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다음 第二 項으로 이것은 現行憲法에 있는 것입니다 「國務總 理는 大統領의 命을 承하여 行政各部 長官을 統理監督하 며 行政各部에 分擔되거지 아니한 行政事務를 擔任한다」 다음으로 아자 憲法 第八十一條 政府提出改憲 案中에서 「憲法委員會는 兩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 法官五人과 民議院議員三人과 參議院議員二人의 委員

나타 政府提出改憲案中에서 第九十八條를 採擇
 될나타 다음으로 附則에 있어서 附則같은
 이것은 政府提出改憲案中에서 採擇을 얻은
 中에서 第三項 參議院은 本法施行後 遲滯함이
 構成하여야 한다 이것을 採擇하지 않고 하는것은
 아까 參議院委員長께서 報告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을사대 다음으로 政府提出改憲案中에서 二條項
 만을 採擇하고 附則은 全項을 全部 採擇한것이
 을사대 以上으로서 萬一 지우지 않을것같은
 按 採擇案이라 하는것은 期滿되므로도 이
 는條文이 政府提出改憲案中에서 採擇되고 이
 條文이 採擇되고 國會提出改憲案中에서는 이
 條文이 採擇되고 이條文이 採擇되었다고 하
 는것을 採擇하였으면 採擇을 나타내는 採擇
 在 時間關係있고 이의 採擇하는 바이므로써
 이것은 採擇한나타 하나 조를 採擇한것이 있을
 나타 政府提出改憲案中에서 이條文만은 採擇
 된것을 採擇하였나타 上院議員中 任命에 의한
 議員의 지용任期는 前項에 準하고 그任期는 大
 統領이 定한다 이것이 採擇되었을나타 그리고
 末項에 「意法施行時의 大統領의 統權은 意法
 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령으로 하고 그任期는 禮
 紀四二八年七月二十三日로서 終了한다」 이 條
 項을 政府提出改憲案中에서 採擇된것을 다시
 添加해서 採擇되었나타 以上으로서 簡略하나
 記錄에 남지 않을것에 있으나 簡單히 報告
 들 다치지 아니하시라 그리고 또 政府提出改憲
 案中에서 官選議員이라는 部分을 採擇한것을
 添附해서 報告하였나타

○臨時議長(申翼熙) 그러나 全院委員會의 報
 告로서 憲法改正案의 綜合採擇案이라고 해서
 說明이 된것입니다 여러분 다하시다싶이 萬
 一 議員들이나 政府側에서 憲法의 明文에 依持
 한 改憲案이라고 하여 公告를 하고 正當한節次에
 그대로 進行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이案은 特
 別히 이번에 提出이 된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議院으로서 決定하는節次를 採擇하여지지
 을사하는 생각인의 意見있으면 採擇하시요
 (「議長」하는이 있음)
 徐二快議員 採擇하시요
 ○徐二快議員 政府提出改憲案과 國會提出改憲案
 을 採擇하였다고 하는 이르는바 採擇綜合案이라
 고 하는 案은 第三案이 아니라 하는것은 採擇
 되었다고 하나타 萬一 이것이 第三案이라고
 할것같은 一種의 改憲案이니까 저이도 三十
 日의 公告를 節次를 採擇하였으면 안되는것이나
 다 安政政局의 危險하다고 할지라도 우리立法
 府의 地地로서는 法理論上 그런節次를 採擇할
 院議로 決定은 絕對 안하게 되는것입니다 먼저
 質疑應答이 끝났을나타는 政府改憲案의 國會
 改憲案 이 案을 同時에 上程시켜 놓고 一讀會
 二讀會 三讀會形式을 거쳐가지고 採擇할것은 하
 고 否決할것은 不決하지는 이것을 우리가 便
 宜上 무엇 무엇을 採擇하자 무엇 무엇을 拋
 棄하기로 하자 이렇게 各派에서 議論된 結果가
 오늘날의 採擇綜合案이라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採
 擇綜合案이라는것은 採擇案이 아니라 하는것은 明
 白히 알라우시기가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 여
 기서 質疑應答이 끝났으니까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大陸討論에 들어가가지고 나머지時間

이 많이 걸려도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自由로 採擇합니다 저이도 各派에서 採擇式
 나와서 採擇이 타든지 反對타든지 討論을 要한
 다고 합니다 그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說明
 을 그程度로 採擇해서 採擇하시라고 할것같은
 나미 遲滯이라는 稱을 採擇한것이 아니고 採擇
 합니다
 ○臨時議長(申翼熙) 意見있으면 採擇하시요
 (「議長」하는이 있음)
 李敬濬議員 採擇하시요

○李敬濬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採擇하시요
 나 憲法改正案에 對한 第一讀會를 하다가 全
 委員會로 採擇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徐二快
 議員의 採擇하신바와 같이 第三案을 내는것이 아
 니고 改正法律案 第二讀會에 있어서 採擇한結果
 를 그렇게 되면 採擇하시라고 하는것이 全院委員會
 의 意見으로서 決定된다는것을 採擇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決定할것은
 全院委員會의 그 決定을 採擇하시라고 採擇
 一讀會를 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서는 全院委員
 會의 그 意見이 採擇되면 그와 같이 二讀會에서
 採擇한 決定을 決定하는 그런階級을 採擇하시
 압니까 그런前提下에서 먼저 全院委員會의 그
 決定된 意見을 採擇할것을 採擇합니다
 (「再讀합니다」하는이 있음)
 (「三讀합니다」하는이 있음)
 ○臨時議長(申翼熙) 지금 勳勳은 全院委員會에
 서 報告한內容 그것이 採擇이 說明한바와 같이
 憲法改正案의 第三案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第一

이 많이 걸려도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은
 自由로 採擇합니다 저이도 各派에서 採擇式
 나와서 採擇이 타든지 反對타든지 討論을 要한
 다고 합니다 그것도 없이 우리가 여기서 說明
 을 그程度로 採擇해서 採擇하시라고 할것같은
 나미 遲滯이라는 稱을 採擇한것이 아니고 採擇
 합니다
 ○臨時議長(申翼熙) 意見있으면 採擇하시요
 (「議長」하는이 있음)
 李敬濬議員 採擇하시요

○李敬濬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採擇하시요
 나 憲法改正案에 對한 第一讀會를 하다가 全
 委員會로 採擇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徐二快
 議員의 採擇하신바와 같이 第三案을 내는것이 아
 니고 改正法律案 第二讀會에 있어서 採擇한結果
 를 그렇게 되면 採擇하시라고 하는것이 全院委員會
 의 意見으로서 決定된다는것을 採擇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決定할것은
 全院委員會의 그 決定을 採擇하시라고 採擇
 一讀會를 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서는 全院委員
 會의 그 意見이 採擇되면 그와 같이 二讀會에서
 採擇한 決定을 決定하는 그런階級을 採擇하시
 압니까 그런前提下에서 먼저 全院委員會의 그
 決定된 意見을 採擇할것을 採擇합니다
 (「再讀합니다」하는이 있음)
 (「三讀합니다」하는이 있음)
 ○臨時議長(申翼熙) 지금 勳勳은 全院委員會에
 서 報告한內容 그것이 採擇이 說明한바와 같이
 憲法改正案의 第三案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第一

案과 第二案에서 거기서 綜合된 것이요 거기서 拔選된 까닭에 第三改憲案이라고 생각하되 않는다고 말씀이 제쳤읍니다. 다른 意見이 없으시면 勿論 그說明을 肯定하느니라. 다만 本案의 本會議에 提出되는 根柢는 全體委員會에서 報告된 그 내용을 그대로 接受하는 決議를 해야 될 것이니 是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다른 意見 없읍니까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다른 意見 없으면 곧 可否를 묻겠읍니다

(「議長」하는이 있음)

지금 憲法會議員이 發言하십니다

○ 申奉岩議員 그밖에 申奉岩 拔選案 이 법제에 거가 되는데 憲法會議에서 拔選案이라 하면 이것이 政府나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보다도 別個의 案이라고 일러지고 또한 그렇게 불려 집니다. 이것은 案이 되는 것이 아니고 政府에서 提出한 改憲案과 國會에서 提出한 改憲案의 案은 綜合拔選한 要領입니다. 그러면 까닭에 이것을 拔選案이라 하면 獨立한 案이 되지요. 그러면 까닭에 이名稱을 저는 法律에 無識한 사람이 되어서 表現하기가 困難합니다. 라는 그렇게 案이라는 文字를 쓰면 法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綜合拔選한 要領 또는 要綱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完全한 改憲案을 拔選해서 決定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방 討論을 始作해서 開始하기 전에 이名稱에 대해서 누가 더 法律的으로 얘기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것을 먼저 決定하시는 것이 옳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臨時議長(申奉岩) 意見 없으면 正式으로 討論해서 말씀하세요. 靑大議員 말씀해요

○ 靑大議員 이제 申奉岩議員이 말씀하신 改憲案中에서 뽑아낸 것을 案으로 하면 기록하다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要領이나 要綱이라고 하면 그것도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事實대로 要綱 拔選하면 條目입니다. 條目으로 우리가 取扱해서 可否를 決定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條目입니다」하는이 있음)

○ 臨時議長(申奉岩) 다음은 徐二煥議員이 發言하십니다. 徐二煥議員을 紹介하십니다

○ 徐二煥議員 아까 申奉岩議員으로부터 提議된 것이 옳은 意見이라고 보아서 이렇게 何如間構想을 하겠읍니다. 兩改憲案 政府提案과 國會提案입니다. 兩改憲案 折衷條項이라 하면 그 법제 없으면 拔選條項이라 하는지 本會議은 折衷條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렇게 規定지으면 第一 옳을 것 같습니다. 意見으로서 말씀드립니다

○ 臨時議長(申奉岩) 意見만을 말씀하셨는데 拔選한 案이라 한다면 綜合案이라고 하면 아모리 說明을 한다고 할지라도 第三案으로 되는 感을 받게 되는 까닭으로 이것을 案이라고 하지 말고 拔選한 條項이라고 하는 意見을 說明했읍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그대로 用語를 쓰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좋읍니다」하는이 있음)

(「없읍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後로부터 이 意見으로 名稱은 拔選한 條項이라고 條文 項目. 라는 뜻이겠읍니다. 그러면 拔選한 條項이라고 名稱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申奉岩議員이 動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全體委員會에서 報告되어 있는 改憲案의 拔選한 條項이 이것을 本會議에 報告했으니 鄭重히 處理하기 위해서 이것을 表決에 부치자는 것입니다.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를 묻지요. 다른 意見 없지요 그러면 이 動議는 다시 說明하지 않아요 表決하십니다

(「표決」)

表決한 結果는 말씀드립니다

在席員數 百六十八人 可에 百四十八票 否에는 한票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어서 이全體委員會의 報告는 拔選條項을 包含한 報告로 接受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改憲案은 前回國會에서 討論하던 것을 繼續해서 上程하게 되는데 贊成 應答를 繼續하던 중에 申奉岩議員이 必要인가요 (「必要없소」하는이 있음)

必要 없으면 다음에 大體討論이 있을 것입니다

(「必要없소」하는이 있음)

大體討論도 必要가 없어요?

(「必要없읍니다」하는이 있음)

그러나 이것은 重大한 案件인 만큼 具體적으로 決議할 때서 正式으로 提議할 때서 大體討論을 省略하지는 決議가 있어야 鄭重한 줄로 압니다

(「議長이 成案해요」하는이 있음)

議長이 提議할 때요?

(「議長이 提議해요」하는이 있음)

議長에게 그만큼 權利를 許容해 주십니까?

(「중합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大體討論은 必要지 않다는 意見인데

異議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異議 없으면 大體討論은 省略합니다 그렇다고 하

면 이憲法改正案에 있어서 大體討論까지 省略되

었으니 議案은 第一讀會의 形式은 아까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을 말씀해요 이하

기말 가십시오 議長에게만 맡기지 말고 議長이

오늘 처음으로 出席한 까닭에 이야기

를 너무 많이 하고 보면 여다가 아까서 못했

던 것이니까

日有款議員 말씀해요

一 (憲法改正案) 一

參照 (一)

憲法改正案 (郭尙勳議員外二二人提案)

憲法中左와如히改正한다

第三十三條第一項但書 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但國會가解散된 때에는 新國會의 總選舉를 實行하

는 날에 그 任期가 終了한 때 國會가 解散된 때에는

그 날부터 二十日以後 三十日以前에 總選舉를 行하

다

前項의 規定은 國務總理와 內務部의 長인 國務委員

은 即時에 職權이 停止되고 國會는 總選舉期間中 國務

總理의 職權을 代行하는 外 內務部의 長인 國務委員의

職權을 代行하는 第六十九條第四項의 節次에 照하

여 選任한다」를 加한다

第三十五條第二項 第三項의 順序로 「國會議員總選

舉가 있을 때에는 그 選舉한 날부터 第十日에 國會의 臨
時會가 集會된다 當該日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翌日
에 集會된다

國會開會中에 大統領 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關位

권 때에는 國會는 遲滯없이 集會한다」를 加하고 第二

項을 削除한다

第五十一條를 「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對하

여 國家를 代表한다」로 한다

第五十五條第二項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在任한다」

를 削除한다

第五十六條第二項但書로 「但國會議員總選舉施行中

에 大統領副統領 또는 國務總理가 關位권 때에는 그 總

選舉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그 後任에 對한 節次를

行한다」를 加한다

第六十條의 二로 「大統領은 國會가 二任期中在籍議員

三分의 二에 達하지 못한 贊成에 依한 國務院 不信任決

議는 二回以上行하였을 때에는 限하여 國務總理의 提議

으로 國會를 解散할 수 있다」를 加한다

第六十六條를 「大統領의 國務院에 關한 行爲는 國務會議

의 議決을 受는 國務總理의 提議에 依하여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의 副署가 있는 文書로 하여야 한다 軍

事에 關한 行爲도 또한 같다」로 한다

第六十八條를 「國務院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組

織된 合議體로서 行政權에 屬하는 國務을 遂行한다」

로 한다

第六十九條를 「國務總理은 大統領이 指名하여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에 依한 承認을 얻어서 任命한

다

國務總理가 關位권 때에는 十日以內에 前項의 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總理의 一次指名에 對한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後 五日이 經過하거나 그 二次指名에 對하여 國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國會가 指名한 者를

國務總理로 任命하여야 한다

國會가 國務總理를 指名할 때에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다

但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다시 投票을 行하

고 過半數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二人

에 對하여 決選投票을 行한다

國務總理의 承認 또는 指名은 大統領選舉以外의 다른

議案에 優先하여 議決한다

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議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免

한다

國務委員總數는 八人以上十五人以內로 한다

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닌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

員에 任命할 수 없다

「國務總理가 任命된 後 七日以內에 國務院의 組織을

完了하지 못하면 當然히 解任된다」로 한다

第七十條를 「國務總理는 國務院의 首班이며 國務會

議의 議長이 된다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은 國會에 對하여 國務院의 權限

에 屬하는 一般國務에 關하여는 連帶責任을 지고 各自

의 行爲에 關하여는 個別責任을 지는다」로 한다

第七十條의 二로 「國務院은 國務總理가 關位권 때에는 總

辭職을 한다 國會에서 國務院 不信任決議를 하였을

時 十日以內에 國會가 解散되지 아니하거나 國會議員

總選舉後 最初에 集會된 國會에서 信任決議를 얻지 못

할 때에는 國務院은 總辭職을 하여야 한다

國務院의 信任 또는 不信任決議는 그 廢議로부터 二十

四時間以上이 經過된 後에 在籍議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로 행한다. 國會는國務院의組織完了 또는總選舉即
後의信任決議로부터一年以內에는國務院不信任決
議를 할 수 없다.

但、在籍議員三分의二以上の贊成에依한國務院不
信任決議는언제든지할 수 있다.

總辭職한國務院은新國務院의組織이完了될때까지
그職務을行한다.」를新設한다.

第七十二條第五號를「臨時國會의集會要求와國會解
散提請에關한事項」으로한다.

第七十三條를「行政各部의長은國務委員이어야하며
國務總理의提請에依하여大統領이任命한다.
國務總理는行政各部의長을指揮監督하고行政各部
에分擔되거나나行政事務를擔任한다.」로한다.

附則(禮紀四二八五年 月 日改正憲法)
本改正憲法은禮紀四二八五年七月二十日부디施行
한다.

本改正憲法施行當時의國務院은本改正憲法施行과
同時에解任된다. 但本改正憲法에依한國務院의組
織이完了될때까지그職務을行한다.

現國會는그任期中在籍議員三分之二에達하지못한
贊成에依한國務院不信任決議를一回한하여도解散
될 수 있다.

參照(一)

憲法改正의提議(政府提案)

憲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다음一項을加한다.

國會는下院과上院으로서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國風の普通、平等、直接、秘密投
票에依하여選舉된議員으로서組織한다. 但上院議

員中國民이選舉한議員의二分之一에該當하는議員
은國政에功勞있는者와學界에名望이있는者中에서
國務會議의議決을인하여大統領이任命한다.
누구든지兩院의議員을解任할 수 없다.

國會議員의定數와選舉에關한事項은法律로써定한
다.

第三十三條 下院議員의任期는四年으로한다.
上院議員의任期는六年으로하고二年마다議員의三
分之一을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國會의必要가있는때에는大統領、
下院의在籍議員四分之一以上 또는上院의在籍議員
二分之一以上의要求에依하여兩院의議長은國會의
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은議長一人、副議長二人을選舉한
다.

上院은副議長議長으로하고副議長二人을選舉한
다.

上院議長은兩院合同會議의議長이된다.

第三十七條 各院은憲法 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
없는限그在籍議員의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의過
半數로써議決을行한다.

法律案其他議案에關하여兩院의議決이一致되지
않는때에는各院의在籍議員過半數가出席한兩院合
同會議에서出席議員過半數로써議決한다.

下院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가진다.

兩院의議長은議決에있어서可否同數인境遇에決定
權을가진다.

第三十八條中「國會의決議」를「各院 또는兩院合同
會議의決議」로한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 수 있다.

다
法律案、豫算案其他議案은먼저下院에提出하여야
한다.

但國務總理와大法院長인法官의任命에關한議案은
上院에먼저提出할 수 있다.

一院에서否決된議案은他院에移送할 수 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
十五日以內에大統領이公布한다.

移送된法律案에對하여異議가있는때에는大統領은
異議書를附하여兩院中의一院에還付하여國會의再
議에附한다. 國會에서各院이그在籍議員三分之
二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の贊成으로
前과같이可決한때에는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
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十五日以內에國會에還付
되지 아니하는때에는그法律案은法律로써確定된다.
大統領은前二項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
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없는때에는公布日로부터二十
日後에効力이發生한다.

第四十三條 各院은國政을監査할 수 있다.

第四十五條第一項中「國會」는「各院」으로하
고、第二項中「在籍議員」은「各院의在籍議員」
으로한다.

第四十六條第二項을다음과같이한다.

國會의彈劾訴追는下院議員五十人以上의發議가있
어야하며그決議는兩院合同會議에서各院의在籍議
員三分之二以上の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の
贊成이 있어야한다.

第四十七條第二項中「國會議員」은「上院議員」으로

로한다

第四十九條中「國會의同意」를「二院의同意」로 「國會의要求」를「二院의要求」로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民의普通、平等、直接、秘密投票에依하여各選區를한다

國會開會中에大統領과副統領은選區에依하여는二選 舉報告를받기爲하여兩院의議長은國會의集會를公 告하여야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選舉에關한開票報告는特別市外 道의選舉委員會가立候補者의得票數를明記하여封 緘後上院議長에게送付하여야한다

上院議長은即時各院의在籍議員過半數가出席한公 開의兩院合同會議에서前項의得票數를計算하여當 選인大統領과副統領을公表하여야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當選은最高得票數로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二人以上인 때에는前項의兩院合同會 議에서多數決로當選者를決定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選舉에關한事項은法律으로定한 得票數로한다

第五十四條中「國會」를「兩院合同會」로한다 第六十二條에다음一項을加한다

大總統公使는大統領이任命하고上院의承認을얻어 야한다

第六十九條第一項中「國會議員總選舉後」를「下院 議員總選舉後」로하고第二項을다음과같이한다 國務委員는大統領이任命하고下院의承認을얻어야 한다

第八十一條第三項中「國會議員五人」를「下院議員

三人及上院議員二人」으로한다

第九十八條第一項中「大統領은國會의在籍議員三 分之一以上」을「大統領、下院의在籍議員三分之 一以上 또는上院의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으로하 고第四項中「國會에서」를「兩院에서各各」로 한다

附 則(續紀四二八五年 月 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후부터施行한다 但上院에關한規 定및上院의存在를前提로한規定은上院이構成될날 부터施行한다

本法施行後上院이構成될때까지는兩院合同會議에 서行할事項은下院이行하고上院議長이行할事項은 下院議長이行한다

上院은本法施行後遲滯없이構成하여야한다 上院이構成될때까지는下院의議決로써國會의議決 로한다

이憲法施行時의國會議員은下院議員으로그그任 期는國會議員의任期의殘期로終了한다

이憲法이施行되後 처음으로選舉된上院議員은特別 市外道마다二得票數의順次에따라第一部、第二部 로나는다 第一部의議員任期六年、第二部の議員 任期는四年 第三部の議員의任期는二年으로한다

議數가같은 때에는年齡順에依한다 上院議員中任命에依한議員의 처음任期는前項에準 하고 그그任期는大統領이定한다

이憲法施行時의大統領과副統領은이憲法에依한大 統領과副統領으로하고그任期는續紀四千二百八十 五年七月二十三日로終了한다

憲法改正提議理由書 今般政府가提案한憲法改正提議의主要内容은兩院

制度와大統領、副統領直接選舉制度의採擇及國務 委員과公使의任命에있어서의下院 또는上院 의承認制度의創設에있다

一、兩院制度의採擇

兩院制度의長短에關하여는 아직論議가區區하지 在兩院制度가國會의輕率不當한議決과遲誤를避할 수있다는點、多數黨의專制를防止할수있다는點、 政府外國會의衝突을緩和시킬수있다는點、上院에 比較的의老練하고圓滿한人物을選出할수있다는點等 의長點가거는에著眼하여美英을先頭로大多數의 民主國家는兩院制度를採擇하고있다 우리民國憲 法은建國初期에있어서의特殊事情、特히山積된國 務의迅速處理를爲하여單院制度를採擇하였거짓인 時、憲政四年은經過한今日에있어서는敍上兩院制 度의長點을活用함으로써國會를더우強化하고國家 百年의大計를確立하고자하는것이國民大多數의輿論입 에비추어 이에兩院制度를採擇하려는것이이다 여기 하나特記할것은本改正案은上述한兩院制度를 採擇하면서도 亦是世界의大勢에따라下院에優越 權을認定하고있다는點이다 兩院의權限關係가어 떻게하는가에關하여는國家에따라 그制度가區區 하지않 國會는民意를反映하기爲하여存在한다는 議會制度의本質에서본다면 民意를原則의으로 더忠實하게反映하는下院에重點을두고그에優越權 을付與하는것이民主主義의要求에合致된다 換言 하면上院은下院과對等한地位를가지는것이아니고 그의正當한任務는積極的인活動에있다기보다 오 리하下院의輕率不當한行動을防止하는 此의外專 制的인役割에있다그를수있으며 英國、佛蘭西、 愛蘭、澳洲、日本等多數의立憲國家는이러한

皆下院에 優越權을 주고 있다. 本憲法改正案도 이러한 進歩의 傾向에 따라 兩院合同會議 下院의 議案先議權 下院의 國務委員承認權等의 規定에 依하여 下院에 優越性을 認定하는 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第一 兩院合同會議에 關한 것인데 이는 兩院이 衝突할 時에 兩院合同會議로 하여 多數決에 依하여 議決하게 함으로써 上院보다도 많은 數의 議員은 下院에 優越하게 하는 方法인데, 改正案第三十七條第二項의 「法律案其他議案에 關하여 兩院의 議決이一致되지 아니할 때에는 各院의 在籍議員過半數가 出席한 兩院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過半數로 議決하다」라고 規定한 것은 이 趣旨에서 由來한 것이다. 第五十三條第五項도 國會가 大統領 副統領을 選舉하는 例外的 境遇에 있어서 下院의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다. 第二 下院의 先議權에 關한 것인데, 改正案第三十九條第二項이 議案의 原則의 由로 먼저 下院에 提出하게 하고 同條第三項이 一院에서 否決된 議案은 他院에 移送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下院에 議案先議權을 通한 優越權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第三으로 改正案第六十九條第二項이 國務委員의 任命에 下院의 承認을 必要로 하고 있는 規定亦是 下院에 一種의 優越權을 주는 結果가 된다. 第五로 附記할 것은 改正案은 上院議員의 三分之一는 民選으로 하고 三分之二는 大統領任命制로 하고 있는 바 이는 國家에 有功한 者의 專斷을 望이 높은 者中에서 大統領이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 上院議員을 任命할 수 있는 點으로써 上院에 老練하고도 國權을 愛護하는 志士를 確保하는 것이요.

二、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舉制度의 採擇
國民主權을 根本原則으로 하는 民主國家에 있어서 는

모든 公務員은 主權者인 國民의 公僕이며 對하여 國民의 對하여 責任을 지는 것이다. 大統領亦是 公務員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行政政府의 首班이며 國家를 代表하는 重責을 지는 것이므로 다는 公務員보다도 一層 그 主權者인 國民의 意思가 그에게 直接的으로 反映浸透되어야 할 것이요 副統領亦是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大統領과 副統領을 國會에서 選舉한다면 그 國民의 間接的으로 選舉한 다는 것은 國民主權의 理想에 徹底하지 못한 것이다. 又 위에 三權分立主義의 原則을 이루는 우리 나라에서 行政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을 選舉한다는 것은 理論上으로나 實地적으로나 妥當하지 않으므로 改正案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直接選舉制度를 採擇하려는 것이다.

三、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任命에 對한 承認權
大統領 中心制을 根據으로 하는 우리 民國에서 大統領의 公務員任命問題特히 國務委員의 任命問題는 여러 方面에서 많이 論議되어 왔고, 毛今 國會會議中에서 提議된 憲法改正案亦是 이 點을 重視한 것으로 思料된다. 政府는 國會와 政府의 緊密 圓滑한 連絡 協調을 確保하려는 趣旨下에 國會의 意思를 付度하여 改正案第六十九條第二項에서 國務委員의 任命에 對한 下院의 承認 同第六十二條第二項에서 大使와 公使의 任命에 對한 上院의 承認을 規定하여 國會의 權限을 強化하고 大統領의 公務員任命權에 自進하여 重大한 制限을 加한 것이다. 以上 今條의 改正案은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舉制度와 兩院制度의 採擇이 點에서 是 通敍의 政府提議 改正案과 그 趣旨가 大同小異하지만 其間 眞正한 民意와 國會의 意思를 다지 尊重하여 兩院制度를 採擇하면서 下院에 優越權을 認定하여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에 下院은 上院

의 承認을 認定함으로써 國會에 重大한 權限을 賦與한 것等의 點에서 그 內容에 重要한 新制度를 創案하였다. 그리고 本改正案은 첫째 兩院制度에 依한 國會의 強化 둘째 大統領 直接選舉制度에 依한 民主主義의 深化 셋째 國務委員과 大使 公使의 任命承認制度에 依한 人選의 適正과 國會政府間의 連絡의 緊密化等으로써 大統領 中心制을 그대로 維持하면서도 尙우려나 現狀에 適合한 民主政治를 實現할 수 있다고 믿어 마지 않는 바이다.

改正提議의 條文別說明

第三十一條第二項을 新設한 것은 兩院制을 採擇하는 當然의 結果임

第三十二條第一項은 兩院은 普通, 平等, 直接, 秘密의 選舉原則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 組織한 上院 議院三分之一는 大統領의 任命制로 하는 것임

第二項은 兩院相互獨立의 原則의 當然의 結果임

第三項은 兩院議員의 定數와 選舉에 關한 細則을 法律로 規定하게 하는 것임

第三十三條第一項은 下院議員의 任期를 現國會議員의 그것과 같이 四年으로 하는 것임 第二項은 上院議員의 任期를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를 改選하는 것인데 이는 下院議員이 四年마다 全員改選되는에 對하여 上院의 永續性과 事務的인 熟練性을 確保하는 것임

第三十五條를 改正한 것은 兩院制度를 採擇한 結果인 議員數가 많은 下院과 議員數가 적은 上院의 均衡을 맞추기 위하여 臨時會要求의 定員數에 差異를 둔 것임

第二項을 削除한 것은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舉報告를

한가爲共和國의集會는第五十三條第二項에
規定하기때문임

一 第三十六條를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
인대副統領이上院議長이兩院合同會議의議長이되
도록하였음

一 第三十七條第一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
한結果임

第二項은議案에關하여兩院의議決이一致하지아니
할때는兩院合同會議에서議決함으로써下院에優
越權을주려는것임

第三項은副統領인上院議長에게는表決權을주지않
으려는것임

第四項은兩院議長에게모두可否同數인境遇에決定
權을주려는것임

一 第三十八條를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
임

一 第三十九條第二項은下院의原則의으로議案의先
權權을주려는것임

第三項은議場의으로下院의優越權을招來한것임

一 第四十條 第四十一條 第四十五條 를改正한
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임

一 第四十六條第二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
한結果인대彈劾訴追의權權은下院議員에게만주
고그決議는兩院合同會議에서가도록하였음

一 第四十七條第二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
한結果인대彈劾裁判所의國會側審判官의資格은上
院議員에게만주었음

一 第四十九條를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
임

一 第五十三條第一項은大統領과副統領의直接選舉

制度를規定한것임

第二項은第三十五條第二項이削除된것을補救上本
條第二項으로新設한것임

第三項과第四項은大統領 副統領의選舉에있어서
投票報告의接受 得票의計算과當選의公證가上院
議長管掌下兩院合同會議에서行하여질것을規定한
것임

第五項은當選決定에關한節次를規定한것인데二人
以上の最高得票者가있는範圍의인例外의境遇에는
兩院合同會議에서選舉하게하려는것임

第六項은大統領과副統領의選舉에關한細則은法律
로制定하게하려는것임

一 第五十四條를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
임

一 第六十二條第二項을新設한것은大使와公使의任
命에對하여上院의承認權을創設한것임

一 第六十九條第一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
한結果인대下院議員의總選舉後처음國會가開會의
있을때에國務總理에對한國會承認을다시인게하
려는것임

第二項은新設한것은國務委員의任命에對하여下院
의承認權을創設한것임

一 第八十一條第三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
한結果인대憲法委員會의國會側委員數을下院은三
人 上院은二人으로하려는것임

一 第九十八條第一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
한結果인대憲法改正의提議에있어서는下院에서는
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 上院에서는在籍議員三分
之二以上으로하여敬의均衡을맞추려는것임

第四項을改正한것은兩院制度를採擇한結果임

一 附則第一項은이改正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
하되 上院에關한規定및그存在을前提로하는規定
은上院이構成된날로부터施行하러는것임

第二項과第四項은上院이構成된때까지의經過規定
임

第五項은現國會議員은全部下院議員으로하고그任
期는國會議員의任期의滿了로써終了시키러는것임
第六項과第七項은第三十三條第二項의結果로서第
一團의上院議員은 三分하여二任期를各各六年、
四年、二年으로하러는것임
第八項은現大統領과副統領은이改正憲法에依한大
統領과副統領으로하고二任期를現大統領과副統領
의任期의滿了로써終了시키러는것임

參照(三)

兩改憲案(拔萃條項)

憲法中다음과같이改正한다

第三十一條 立法權은國會가行한다

國會는民議院과參議院으로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國民의普通、平等、直接、秘密
投票에依하여選舉된議員으로組織한다

十구구兩院의議員은各各八人이다

國會議員의定數와選舉에關한事項은法律로規定한
다

第三十三條 民議院議員의任期는四年으로한다

參議院議員의任期는六年으로하고二年年마다議員의
三分之一을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緊急의必要가있는데는大統領、
民議院의在籍議員四分之一以上 또는參議院의在籍
議員二分之一以上의要求에依하여兩院의議長은國

會議을召集한다

會의臨時會의集會를公告한다

第三十六條 民議院은議長一人, 副議長二人을選舉한다

參議院은副統領을議長으로하고副議長二人을選舉한다
參議院議長은兩院合同會議의議長이된다

第三十七條 各院은憲法 또는國會法에特別한規定이 없으면二在籍議員의過半數의出席과出席議員의過半數로써議決을行한다
法律及其他議案에關하여兩院의議決이一致되지아닐 때에는各院의在籍議員過半數가出席한兩院合同會議에서出席議員過半數로써議決한다

民議院議長은議決에있어서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議長은議決에있어서可否同數인境遇에서는決定權을 가진다

第二十八條 國會의會議는公開한다 但各院 또는兩院合同會議의議決에依하여秘密會로할수있다

第三十九條 國會議員과政府는法律案을提出할수있다

法律案,豫算案及其他議案은먼저民議院에提出하여야한다 但國務總理와大法院長인法官의任命에關한議案은參議院에서提出할수있다
一院에서否決된議案은他院에移送할수없다

第四十條 國會에서議決된法律案은政府로移送되어十五日以内에大統領이公布한다
移送된法律案에對하여異議가인 때에는大統領은異議를附하여兩院中의一院에還付하여國會의再議에附한다 國會에서各院의二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의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의贊成으로써前項같이可決한 때에는二法律案은法律로서確定된다

法律案이政府로移送된後十五日以内에國會에還되지아니하면 때에는二法律案은法律로서確定된다
大統領은前二項에依하여確定된法律을遲滯없이公布하여야한다
法律은特別한規定이 없으면 때에는公布日로부터二十日後에効力이發生한다

第四十五條 各院은議員의資格을審査하고議事에關한規則을制定하고議員의懲罰을決定할수있다
議員을除名함에는各院의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の贊成이 있어야한다

第四十六條 大統領 副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審計院長 法官其他法律이定하는公務員이 二職務遂行에關하여憲法 또는法律에違背한 때에는國會의彈劾의訴退를決議할수있다
國會의彈劾訴退는民議院議員五十八人以上의發議가 있어야하며二決議는兩院合同會議에서各院의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の出席과出席議員三分之二以上の贊成이 있어야한다

第四十七條 彈劾事件을審判하기爲하여法律으로써彈劾裁判所를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副統領이裁判長의職務를行하고大法官五人과參議院議員五人이審判官이된다 但大統領領事副統領은審判官에는大法院長이裁判長의職務를行한다

彈劾判決은審判官三分之二以上の贊成이 있어야한다
彈劾判決은公職으로부터罷免함에 의한다 但이에依하여民事上이나刑事上의責任이免除되는것은아니다

第四十九條 國會議員은現行犯을除한外에는會期中二院의同意없이逮捕 또는拘禁되지아니하며會期前

에逮捕 또는拘禁되었을 때에는二院의要求가 있으면會期中釋放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副統領은國民의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依하여各各選舉한다
國會閉會中에大統領과副統領을選舉할 때에는二選舉報告을받기爲하여兩院의議長은國會의集會를公告하여야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選舉에關한開票報告는特別市의道의選舉委員會가立候補者의得票數를明記하여封緘한後參議院議長에게送付하여야한다
參議院議長은即時各院의在籍議員過半數가出席한公開된兩院合同會議에서前項의得票數를計算하여當選된大統領과副統領을公布하여야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當選은最高得票數로써決定한다
最高得票者가二人以上인 때에는前項의兩院合同會議에서多數決로써當選者를決定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의選舉에關한事項은法律으로써定한다
大統領과副統領은國務總理 또는國會議員을兼할수 없다

第五十四條 大統領은就任에際하여 兩院合同會議에서左의宣誓를行한다
「나는國憲을遵守하며國民의福利를增進하며國家를保衛하여大統領의職務를誠實히遂行할것을國民에게嚴肅히宣誓한다」

第六十九條 國務總理는大統領이任命하고國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民議院議員總選舉後新國會가開會되었을 때에는國務總理任命에對한承認을다시얻어야한다
國務總理가關位된 때에는十日以内에前項의承認을

要求하여야 한다
國務委員은國務總理의提請에依하여大統領이任免한다

國務委員總數는八人以上十五人以內로한다
軍人은現役을免한後가아니면國務總理는國務委員에任命될수없다

第七十條의三項은모다유과같이新設한다

國務總理와國務委員은國會에對하여國務院의權限에屬하는一般國務에關하여는連帶責任을지고各自의行爲에關하여는個別責任을진다

第七十條의二로다유과같이新設한다

民議院에서國務院不信任決議를하거지나民議院議員總選舉後最初에集會된國會에서信任決議를일지못한때에國務院은總辭職을하여야한다

國務院의信任는不信任決議는그發議로부터二十四時間以上이經過된後에在籍議員過半數의贊成으로行한다
民議院은國務院의組織完了 또는總選舉後의信任決議로부터一年以內에는國務院不信任決議를할수없다
但在新議員三分之二以上の贊成에依한國務院不信任決議는언제든지할수있다

總辭職을國務院은新國務院의組織이完了된때까지그職務을行한다

第七十三條 行政各部의長은國務委員이어야하며國務總理의提請에依하여大統領이任免한다
國務總理는大統領의命令을承하여行政各部長官을統理監督하며行政各部의分擔되지아니한行政事務를擔仕한다

第八十一條 大法院은法律을訂定하는바에依하여命令規則과處分의憲法과法律에違反되는與否를最終적으로審査할權限이있다

法律이憲法에違反되는與否가裁判의前提가되는때에는法院은憲法委員會에提請하여그決定에依하여裁判한다

憲法委員會는總統領을委員長으로하고大法官五人과民議院議員三人과參議院議員二人의委員으로構成된다

憲法委員會에서連憲決定을할때에는委員三分之二以上の贊成이있어야한다
憲法委員會의組織과節次는法律로제정한다

第九十八條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民議院의在籍議員三分之一以上 또는參議院의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の贊成으로제정한다

憲法改正의提議는大統領이이공公布하여야한다
前項의公告期間은三十日以上으로한다
憲法改正의議決은兩院에서各各在籍議員三分之二以上の贊成으로제정한다

憲法改正이議決된때에는大統領은即時公布하여야한다

附 則

(禮紀四千二百八十五年 月 日憲法改正)

이憲法은公布한날로부터施行한다
但參議院에關한規定및參議院의存在를前提로한規定은參議院이構成된날로부터施行한다

本法施行後參議院이構成될때까지는兩院合同會議에서行한事項은民議院이行하고參議院議長이行한事項은民議院議長이行한다
參議院이構成될때까지는民議院의議決로써國會의議決로한다

이憲法施行時의國會議員은民議院議員으로하고그任期는國會議員의任期의殘期로써終了한다

이憲法이施行된後 처음으로選出된參議院議員은特別市外道이다
그得票數의順次에따라第一部、第二部、第三부로나온다
第一部的議員의任期는六年、第二部的議員의任期는四年、第三部的議員의任期는二年으로한다
票數가같은때에는年齡順에依한다

○白南軾議員 이重大한 改憲案을 諸議會를 省略하고 이렇게 한다는것은 大端히 疑心을 가진분이 제실지 알수없을나마는 이것이 數個月前부터 論議가 되었으며 檢討하고 檢討하고 이런關係上 覺알을알며 國民이러분도 여기에對해서 어떻게 經緯가 되었는것을 잠안나다

저야 大端히 어리가 鈍합니다마는 憲法條文을 다 의라고해도 다의고 그러한 程度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諸議會를 省略하고 即席에서 表決하기로 動議하는바입니다

○臨時議長(申翼熙) 白議員 注釋해주세요 動議할려면 第一議會를 마치고 第二議會에 들어가는데 第二議會를 即席으로 여기서 進行하면서 나아가야 拔茲條項이 이야기까지 지않어요 그러면 그렇게 動議해서 말합세요 (笑聲)

○白南軾議員(繼續) 그러면 第二議會로 넘어가기로 動議하는바입니다 (一即席에서) 하는이 있음)

即席에서 :
○臨時議長(申翼熙) 白南軾議員의 動議는 第一議會를 마치고 第二議會를 即席으로 進行하는것입니다 再請하여요 (一再請합니다) 하는이 있음)

(「三讀합니다」하는이 있음)
그리면 白南社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을나
다 意見있을나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意見없으면 表決합니다 白南社議員의 動議는
說明하지않아도 表決합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人 可決 百三十三 否의는 없
습니다 그리면 의 動議는 可決되었을나다 그리
면 이 卽席으로 第二讀會로 들어가게 되
는것입니다 의의분 아시다싶이 第二讀會는 逐
條해서 朗讀하며 表決해나가는것입니다 그리면
어 案은 國會議員이 提出한 案과 政府에서
提出한案두가지가 있으니 차례 차례 어떤것을
한다든지 물을 綜合해서 하자든지 意見을 말
을해도

(「議長」하는이 있음)

李鍾榮議員 말씀해요

○李鍾榮議員 이의 全院委員會의 拔萃條項을
우리가 接受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第二讀會에서 逐條를 하자고하면 時間만 걸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문에 그 拔萃條項
二條로를 一括해서 表決하는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면 大端히 略하고 어때도 보아서
이것이 改善案의는 적으나 慎重을 期치 못한
點이 있는가 여러 議員들과 아울러 國民同志
나 國民大衆이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案때문에 慎重을 期할뿐 아니라 이
國會에서 잘못한다면 승을 넘겨줄만한 이 僑商
입니다 그런데문에 慎重을 期하지않고 잘못했

다 嫌疑는 없을것도 압니다 또한 表決에
臨해서 表決後의 더구나 產後에 이運用이 잘
되도록 行政府當局이 特別히 覺悟를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產後가 까딱하면 승을 넘길
뿐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覺悟할줄도 알
면 一括表決하기를 勸誘하고 싶습니다
(「남아지까지 말씀하세요」하는이
있음)
이들의 表決方式까지 말씀하겠습니다
(「表決方式이 아닙니다」하는이
있음)
저 이렇게 되었읍니다 拔萃綜合案을 表決하
고 압니다 만약 否냐? 그리면 다른것은 可決
로 否決이됩니다
(「可否를 짓는데 두번 해야됩니다」
하는이 있음)
그리면 두번으로 가르기로 합니다 여기에서
방 拔萃條項案을 表決하고 또 그다음 削除된
部分을 表決하고 그렇고 두번에 나누어 하는
때...
(「一括해요」하는이 있음)
다 필요? 한말에...
智惠를 빌었읍니다 拔萃條項을 二讀會 三讀會
다 省略하고 한번에 表決하는것입니다
(「表決方式은...」하는이 있음)
表決方式은 두고 그것만 勸誘합니다
○臨時議長(申寶熙)李載濬議員 發言합니다
○李載濬議員 李鍾榮議員의 말씀한 그 意圖대
로 하는때 備의 具體的으로 말씀했읍니다
全院委員會에서 拔萃한 條項을 一括해서 可否

表決하기로 하고...그러면 採擇이 되는데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지 條項의 對해서 可否表決을
또한한 문어압니다 그것은 아마 「否」하는때
로 結論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두번 全條項
을 통로 나누어서 各其 可否를 한번式을
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拔萃條項이 第二讀會
로 採擇되면 그것만을 第三讀會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動議를 합니다 拔萃
條項에 對한것을 一括해서 可否表決하고 남아
지 條項에 對해서 또 一括해서 可否表決을
動議합니다 마시 말씀드립니다 全院委員會
에서 採擇된때로 그 拔萃條項에 對해서 一括
해서 表決하기로 하고 拔萃에서 빠진 남아지
條項 亦是 國會側에서 먼저와 政府側에서 낸
全條項을 또 一括해서 表決할것을 勸誘합니다
(「再讀합니다」하는이 있음)
(「三讀합니다」하는이 있음)

○臨時議長(申寶熙) 두번 發言하셨는데 議長
이 동건때는 李鍾榮議員도 動議고 李載濬議員
도 動議인데 內容이 같습니까 다음니까
(「같습니다」하는이 있음)
그리면 再讀 三讀 다 있죠
(「네」하는이 있음)
이 案은 改善案이니만큼 拔萃한 條項이 아마
보지자고 하는때는 거진다 條項 그대도 되었
을것입니다 그 以外에 다른 部分 또한 表決
하자고 하는것은 議長의 머리로서는 잘 알수
가 없는 말씀입니다 萬一 남아지가 있다면
原案을 문건은대 改善의 되지않는 部分은 元
憲法대로 되게합니다...拔萃以外에도 政府에

全院委員會에서 拔萃한 條項을 一括해서 可否

全院委員會에서 拔萃한 條項을 一括해서 可否

馬山 案이나 國會의 案이 그대로 있는것인데
拔擢의 案이거지 아니했다하면 그것은 問題도
없어 否決될지 아니겠소

(「그렇습니다」하는의 있음)
이러한 容恕하심소 元來 本議長으로서
病後의 功績을 功績을 인정합니까 아나 拔擢
條項이라그 功績을 拔擢하느라 兩政黨의
조치할것이 있따고하면 아무것도 問題가 없는
데 그것이 다라질라고 그러니 지방 李載滌議
員의 勳績을 拔擢의 功績은 아니요 다른 意見이
어요?이러한 功績을 功績을 功績을 功績을
나이다

○朴定根議員 지금 李載滌議員의 功績에對해서
우리는 功績을 意法改正案에對해서 討論을하다
가 第一國會에서 拔擢한條項을 第二國會으로
가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가 우의정자
에는 拔擢되지 아니한條項은 第二國會으로 넘어오
지 아니했으니 第一國會에서 功績이 없으면 李
載滌同志께서는 그것은 條項안가지고 온것이
그렇지않고 法律案은 功績이 없는 案이던이
오지않고 條項안 넘어왔으나 어떻게 이야기했
는데 그러나 그렇게 復雜하게 생각하자하고 條
項안이 한案이되어가지고 拔擢한條項이 한案
이되어가지고 百三十三對等으로 第二國會에
넘어오고 拔擢되지 아니한條項은 第一國會에서
숙의하고 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參院委員會에서
본지 여기서 案을 綜合해서 審查하기로했기
때문에 그이야기입니다 萬一 綜合해서 審查하
는 이야기 가아니면 안되었지만 우리는 國會와
政府案의 案을 綜合해서 審查하기로 이야기

가되었고 綜合한案 가운데에서 拔擢한條項만을
第二國會으로 넘기기로했으니 拔擢되지 않은條項
은 當然히 第一國會에서 숙의하고 습니다 그러
면 다만 第二國會에 넘어온條項만 이야기하는
데 아나해서 功績이 있는것은 李載滌議員의案에
만합니까 綜合해서 拔擢한과 안한과 그것을
한번 拔擢한것과 그다음에 다음에 또 可否를
조한것을 물어야하겠습니까 그렇게마시고 綜合
해서 拔擢하는게 參院委員會案으로 그대로 합
해서 하였으면 순한것을 功績이 있는게 功績이
있습니까

○臨時議長(申實顯) 이부분 功績을 功績을 아무
의念에도 功績을 功績을 功績을 功績을 功績을
나리하여야해서 功績을 功績을 功績을 功績을
法律이라는것은 普通法律案은 第一國會 第二國會
會館次를맡게되는것이 深蓋하게 處理하기爲함인
것을 우리가 다알고있습니다 하물며 國家의根
本法인 憲法은 더욱더 重要한것입니다 第一國會
에서서는 法案의 全體로 第二國會으로 넘어오지
아니하거나 全體가 第二國會으로 넘어오거나하는
것은이제 法律案에 있어서 어떠한부분은 第一國會
에서 숙고 어떠한부분은 第二國會으로 할지
어오는것이 없는것을 어떠한이 記憶하세요 그
다음으로 이러한 拔擢한條項은 다른案이 아닌만
음 第二國會에 그러므로 功績의改憲案으로 第二
國會에서 取扱되니만큼 아나 本議長이 말씀
한바와 마찬가지로 萬一 拔擢한條項에對하여 두
個의案을 必要치 않은것은 다削除했다는것으로
마련이되어있었다면 拔擢한條項만을 一括해서
表決하면되지만 내공은것을 같이따라서 한꺼번

에 第二國會으로 넘어온것입니다 하니까 일은 조
금 아나 復雜한것지만 手續을 다해야될것
입니다 그러므로 李載滌議員의勳績은 成立이되
있을것이며 正確하다고보아요 다른 意見이
(「없소」하는의 있음)

다른 意見이 있으면 拔擢에 부칩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六十八人 可也 百三十六員 否也
한편도없어 이勳績은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나구어서 拔擢을하게되면 拔擢하는 方法에對
하여 意見이오면 말씀하시고 萬一 意見이오면
議長으로서 말씀하고 습니다
(「말씀하세요」하는의 있음)

議長이 말해요 그러면 重大한改憲案이니만큼
表決하는方式은 從來의前例요 그렇고 宣當의
그렇게해야 鄭重한만큼 無記名投票의方式으로할
을議長은 宣布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投票
을舉行하기로해요 在席員數 다시 點檢하고요
(「議長」하는의 있음)
(場內應然)
어떠한 다른 意見이오면...
(「異議있소」하는의 있음)
장간 容恕하심시오 議長의報告에依하면 重
要한 憲法案인만큼 第二國會을 功績이
第三國會을 省路하기어려울것이아나 秘密投票의
方式은 第三國會에 쓰도록하고 第二國會의方式
은 舉手表決해도 無妨하다는 意見입니다 그러
면議長이 말씀을 한번 宣布합니다 그러면
어서 宣布하는것은 未安합니다마는 이러한表決
만은 舉手表決하기로 宣布해드려요 注意하세요

그리던 곧 表決합니다 綜合拔萃案條項一括해서 表決하자는 動議에依해서 可습니다 監票議員 內분은 指定할까요

(「異議없소」하는이 있음)

監票議員內분은 指定합니다 未安하지만 徐二煥 議員 鄭文欽議員 張建相議員 金良赤議員 內분 이 手苦하세요 그리던 지금 表決합니다 拔萃 條項 이것을一括해서 表決에 부칩니다

(舉手表決)

表決한結果를 報告해드립니다

在席員數 百六十六人 可에 百五十一票 否에는 한票도없이 拔萃條項은 第二讀會에서 通過되었 습니다 傍聽席에서 注意하세요 萬一 規則을 지키지않고 拍手하는이가있으면 未安하지만 選 場을 命하게됩니다 다음은 拔萃條項에 붙지않 은部分 또한一括해서 表決해야할것입니다 이 것은 어머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拔萃條 項에 붙지않고 拔萃條項에서는 必要지않다 그래서 前除된部分일것입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六十六人 可에 한票도없고 否에 百四十一票입니다 拔萃條項에 붙지않은 7個의 改憲案 各條項은 다否決되었습니다 그리던一括해서 表決하는만큼 아마 改憲案의 第二讀會 는 이로써 끝이난模樣인데 이票을 어떻게處 理할것을알고주세요 ○金益魯議員 이改憲案을 우리國會가 慎重히 이것을 하었다고하는것은 滿天下에 알리기爲해 서 第三讀會의可否는 起立으로써 滿天下에 알 리도록하는것이 좋다고해서 이것을 動議합니다

(再請 三請 있음)

動議主文을 고치셨읍니다 第三讀會를 省略하고 起立投票하기를動議합니다

○臨時議長(申翼熙) 注意하세요 金益魯議員은 再選議員이신데 하고 으며 동안 議事堂에서 時 間을지연만큼 疲勞한 나머지 若干 錯誤가있는것 입니다

(笑聲)

第三讀會會略이아니라 이改憲案은 第二讀會를 終了하고 第三讀會로 直刻을어가겠다는 表決 하는方式은 起立으로 表決하자는 意味일것입니 다 들립지요

(「없소」하는이 있음)

그리던 金益魯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다 른 意見없으면 이로써 第三讀會에 붙어가서 이改憲案 第二讀會에서 通過한것을 全體를 다 시 通過하게되는때 이表決하는方式은 起立으로 서 表決하자는것까지가 動議의概要입니다

(「없소」하는이 있음)

表決한結果 알겠습니다

(舉手表決)

在席員數 百六十六人 可에 百三十三票 否에는 한票도없읍니다 그리던 이動議는 可決되었어요 그리던 또한 곧 表決에 붙어가겠다는 未安하 지만 監票議員으로作定된 內분 手苦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던 起立表決하겠읍니다 表決한 結果를 報告해드리겠습니다 이改憲案을 表決한 結果가 在籍議員 三分之二以上 即百六十六名出 席으로 可에 百六十三票 否에는 한票도없이

贊成이 되었음으로 憲法 第九十八條第三項의 規定에 依支해서 이改憲案은 可決된것을 宣布해드립니다 다 그리던 밖도보고요

(「議長」하는이 있음)

尹泳善議員의 意見을 들었어오

尹泳善議員은 紹介합니다

○尹泳善議員 武裝한 森嚴한聲傳에서 連日 우리國會議員은 行動의 自由가있었다고할가 없 었다고할가 우리들 當中을不拘하고 歴史的인 改憲案을 오늘通過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가운 데에 兩改憲案에對한 拔萃條項을 通過하므로말 미암아서 自然히 이가운데에서는 우리들이 후 後에있어가지고 修正을 하지않으면안될것도 많 이있는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드리자고 할 것같은면 參議院을 구제되었는데 參議院에對한 組織이라든가) 權限에對한것도 規定을 지지않으 면 안될것입니다 그외에 大統領의 直選制를 實施하게된다면 여기에對한 모든節次라든가 어머가지것을 또規定을 지지않으면 안될것입니 다 參議院에서 政府에對한 不信任案을 提出 하게될때에對한 手續節次라든가 或은 國務院에 서 民議院을 解散을하게될때에 있어가지고 또 여기에對한 어머가지 節次가 必要할것입니다

(「解散에對한것없소」하는이 있음)

萬若에 이러한點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생각 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어가지고는 今後에있어서 不遑히將來 에있어가지고 우리들은 根本的으로 完全한 修正을 해나가지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見地下 에있어가지고 憲法修正委員會라는것을 組織해서

15

여기에 대하여도 專門的으로 檢討하고 研究
을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아
여기에 대한 附帶條項에 대한 것은 簡單히 期願을
해 가지고 어떠한 志願의 贊同을 얻고자 합니다.

附帶條項 本憲法改正案中 參議院의 組織과
限에 關한條項 大統領의 法律拒否權에 關한條項
大統領直選의 立候補에 關한條項 民議院의 不信
任決議와 國務院 總辭職에 關한條項 國會解散에
關한條項을 檢討하기 爲해서 短時日內에 憲法修
正委員會를 組織한다. 이러한 附帶條項을 여기에
서 決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해서 勸諭를 합니
다. 많이 贊同해 주시길 바랍니다.

○臨時議長(申翼熙) 尹泳善議員의 勸諭는 모든
가지 節次와 그것을 準備하기 爲해서 憲法修正
委員會를 組織하자는 勸諭라고 말하였는데 再
請있어요.

○金宗順議員 再請이요
○臨時議長(申翼熙) 三請된으면 勸諭는 成立
되지 않았을나마 注意해 주세요. 다른 意見없으면
을 散會를 하겠는데 暫間注意해 주세요. 議案으로
重大한 일을 宣布해 드릴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改
憲案이 國會에서 通過되었을지라도 公布가 있는
뒤에 効力이 發生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아시
다시 現在의 憲法에 依支하고 보면 副統領의
辭職한 것을 受任한 것이 前次의 會議의 인일 것
입니다. 그러나 副統領選舉는 即時로 한다는 것
이 아마 現行의 憲法일 것입니다. 어떠한 議
이 考慮해서서 疲勞한 나머지지만 來日 다시
이 務장은 出席으로 다시 모여서 副統領의 選舉
문제만 다루게 할 것으로 重大한國事를 議論해 주실

으면 妥協했다는 생각이예요. 그러므로 다 同意
見없으시면 오늘은 이로써 散會하고 來日午前
十時에 다시 本會議를 開會할 것을 宣布하면서
散會합니다.

(下午九時三十分散會)